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년 7월 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5년 7월 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2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7월 12일) 상정
- 제120회 부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5년 7월 13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체육청소년과장 남상수)

□ 제안이유

- 1999년 조례 제정 이후 장기간 사용료를 인상하지 아니하여 2004년 기준 운영수익이 62.5퍼센트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사용료 현실화 및 무상 체육시설을 유상으로 전환하고, 감면기준을 명확히 하여 운영적자를 점진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며,
-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시장이 강습프로그램을 개설·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체육시설 수탁단체에게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여 시민위주 시설운영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 밖에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기능 및 위치를 정함.
(안 제2조 및 별표 1)
-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체육시설내 상설스포츠 및 취미교실을 설치하는 등 체육 시설 개방과 이용 및 제한, 사용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 4조 내지 제6조)
- 체육시설 사용시간을 종전에는 동·하절에 따라 다르게 조기, 주간, 야간사용 시간을 정하였으나, 동·하절기 구분을 없애고 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부 시설에 대하여는 주간을 오전·오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함.(안 제7조)
- 체육시설 사용용도별로 사용료를 정하고, 상시 이용하는 사람을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단체 또는 개인 레슨을 허용하되 레슨비 상한선을 정하여 개인지도 부담을 줄여 수입을 세입으로 처리하도록 개선하고, 자원봉사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육시설 사용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체육경기나 행사를 관람하거나 입장할 경우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발행하는 근거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
- 사용료 감면 범위를 종전에는 전액감면, 30퍼센트 감면 등으로 구분하였으나 앞으로는 전액감면, 50퍼센트 감면 및 30퍼센트 감면 등으로 구분하고, 시장이 감면할 수 있는 범위를 3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자 함.(안 제11조)
- 체육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산정시 공

공요금 및 부대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 체육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위탁시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며, 1회 연장 가능하도록 정하고, 수탁자 선정기준, 민간위탁시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 위탁 업무범위와 감독, 위탁계약의 해제 근거를 정함.(안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및 제24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가 '99년 이후 한번도 인상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에 와서 올리다 보니 인상폭이 커서 민원이 제기되고 요금이 많다는 의견이 있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고 민원은 테니스장 사용료 부분인 것 같으며 테니스장이 양분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운동장 테니스장은 25,000원의 요금을 받고 운영하고 있으나 다른 일부(복사골) 테니스장은 17,000원을 받고 있어 많이 인상된 것 같지만 민간시설은 대부분 4~5만원씩 받고 있고 시설기관에서 민원제기도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요금을 인상하는 추세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려면 시민들이 체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년 정도 지났으면 5천원 정도 올리는 것은 이용자들에게 큰 부담은 아니라고 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을 민간에게 위탁했을때 공공성 확보방안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공공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으며 시설의 출입자 통제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민간위탁 운영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시군은 요금기준이 거의 평일로 되어 있는데 부천시는 오전, 오후로 구분한 것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대관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체육행사 등 시장이 주관되는 행사가 전에는 전액 감면하던 것이 30%로 낮추게 된 이유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면 폭이 너무 커서 민원의 소지가 있고 해서 명문화시켜서 업무추진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412호
의결 연월일	2005. 7. 15 (제120회)

제안년월일 : 2005년 7월 14일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일부 조례 문구를 일반시민들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고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에 있어서 과다하게 요금이 책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한 요금으로 인하하는 것으로 수정

2. 주요골자

- 체육시설의 정의 중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모든 체육시설’로 수정.(안 제3조 제1호)
- 관람자의 정의 중 ‘체육시설을 관람하는 사람을 말하며’를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로 수정.(안 제3조 제3호)
- 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 정의 중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는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로 수정.(안 제5조 제2항)
- 관람권의 정의 중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10 이하’를 ‘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5이하’로 수정.(안 제9조 제3항)

- 시설의 사용수익허가의 정의 중 ‘대부료’는 ‘사용료’로 자구 수정.(안 제15조 제3항)
-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일부 수정.(별표 2)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1호 중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모든 체육시설”로 한다.

안 제3조제5호 중 “체육시설을 관람하는”을 “유료관람을 하는”으로 한다.

안 제5조제2항 중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는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제3항 중 “100분의 10 이하”를 “100분의 5 이하”로 한다.

안 제15조제3항 중 “대부료”는 “사용료”로 한다.

안 [별표2] 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 의 하단부중 “인조잔디구장 및 테니스장”을 “인조잔디구장”으로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체육시설”이라 함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u>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u>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p> <p>5. “관람자”라 함은 <u>체육시설을 관람하는 사람</u>을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p> <p>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 ① 생략</p> <p>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 교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월간·주간·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u>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한다.</u></p> <p>제9조(관람권) ①~② 생략</p> <p>③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매수의 <u>100분의 10</u> 이하로 하고, 초과 발행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p> <p>④~⑤ 생략</p> <p>제15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② 생략</p> <p>③<u>대부료</u>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p>	<p>제3조(정의)----- -----.</p> <p>1 ----- ----- <u>모든 체육시설</u> ----- -----.</p> <p>5. ----- <u>유료관람을 하는</u> ----- -----.</p> <p>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u>주민에게 알려야 한다.</u></p> <p>제9조(관람권) ①~② (제정안과 같음) ③-----<u>100분</u> 의 5----- -----.</p> <p>④~⑤ (제정안과 같음)</p> <p>제15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②(제정안과 같음) ③<u>사용료</u>----- ----- -----.</p>

[별표 2]

전용사용료(제8조관련)

(단위: 원)

시설별	사 용 구 분		체육경기		체육이외 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육상장(트랙)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잔디구장		주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야간	1,5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보조경기장		오전	40,000	60,000	200,000	300,000
			오후	40,000	60,000		
	야구장		주간	40,000	60,000	80,000	120,000
인공암벽		주간	40,000	60,000			
시민운동장			오전	40,000	60,000	200,000	300,000
			오후	40,000	60,000		
원미운동장			주간	80,000	120,000	150,000	250,000
			야간	80,000	120,000		
부천체육관	체육관		주간	150,000	200,000	300,000	400,000
			야간	200,000	300,000	400,000	550,000
	체력단련장		주간	60,000	80,000	100,000	150,000
			야간	80,000	100,000	150,000	200,000
	보조운동장(1)		오전	40,000	50,000	100,000	150,000
			오후	40,000	50,000		
보조운동장(2)		오전	20,000	30,000	50,000	80,000	
		오후	20,000	30,000			
송내사회체육관			오전	40,000	60,000	60,000	80,000
			오후	40,000	60,000	60,000	80,000
			야간	80,000	120,000	120,000	160,000
소사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오전	30,000	40,000	50,000	70,000
			오후	30,000	40,000	50,000	70,000
			야간	60,000	80,000	100,000	140,000
	수영장		09:00~18:00	400,000	520,000	800,000	1,040,000
			09:00~12:00	140,000	182,000	280,000	364,000
			12:00~18:00	300,000	390,000	600,000	780,000
서촌다목적체육관			오전	30,000	40,000	50,000	70,000
			오후	30,000	40,000	50,000	70,000
			야간	60,000	80,000	100,000	140,000
테니스장(면당)			주간	30,000	40,000		
			야간	45,000	60,000		
궁도장			주간	30,000	40,000		
			야간	40,000	60,000		
북부수자원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주간	60,000	80,000	150,000	200,000

-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함.
-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육상장, 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 징수하되,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함.
- 유아,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체육수업은 체육경기에 준함.

[수정안 포함]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천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광고·게시·공연·관람·기타행위를 말한다.
3. “전용 사용자”라 함은 경기장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사용하

는 사람을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람자”라 함은 유료관람을 하는 사람을 말하며,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7. “단체”라 함은 동일목적으로 20인 이상이 인솔자에 의하여 일일 또는 월간으로 동시에 사용 또는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
8. “기본사용료”라 함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미리 일정기간 준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9. “회원제”라 함은 1월 이상 계속하여 체육시설을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10. “연습사용권”이라 함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징수하고 발급하는 증표를 말한다.
11.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과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
1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과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13.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 이하의 군인과 전투경찰 및 경비교도대를 말한다.
1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5.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 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규칙과 체육활동 지도를 위하여 체육지도자 또는 전문인을 배치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등) ①시장은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개최 등 시설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공정한 이용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각 체육시설별로 상설 스포츠교실, 취미교실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월간·주간·일간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시설 종류별 사용료 및 이용료, 감면기준 및 이용방법 등
3. 상설 강습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료, 이용방법 등
4. 안전사고 발생시 재난 및 응급구조체계 등

③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제한 사유 및 기간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도·시의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때
2. 시설의 개·보수를 실시할 때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때

제6조(사용허가 등) ①체육시설 사용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체육시설의 사용허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허가한다.

1. 체육경기 : 대한체육회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 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행사
2. 공공행사 : 국가 또는 도·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3. 문화예술행사 : 공연법령에 따른 공연행사
4. 일반행사 :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각종 행사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2인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도·시의 행사·경기
2.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행사·경기
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경기

제7조(사용시간 등) ①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사용시간 내에 경기가 끝나지 아니하거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조 기	주 간		야 간
		오전	오후	
시 간	06:00~09:00	09:00~13:00	13:00~18:00	18:00~23:00

②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 또는 사용중지시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산정.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을 설치한 시점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시점까지 사용한 것으로 산정

제8조(사용료의 부과·징수) ①시장은 체육시설(공공부지 및 공원 내 설치된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자에게 대하여는 전용사용료, 연습사용료, 방송사용료, 상업사용료 및 부속시설사용료 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2 내지 별표 6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②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 또는 개인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행과 수강료를 부과·징수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강습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인 강습프로그램 수강료는 월 사용료의 5배 이내로 한다.

④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보며, 전용 사용하는 때에는 체육경기 1게임을 기준으로 하고, 체육이외의 행사 및 연습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초과 시간당 :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2. 초과 게임당 : 당해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20 가산

⑤제1항의 기본사용료는 전액을 체육시설 사용허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습이용료 전액을 수강하기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을 연간 계속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월 사용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⑥시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하여 획득한 마일리지에 상당하는 금액이 표기된 증표를 제출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⑦사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관람권) ①전용 사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 또는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액을 명시한 관람권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은 기준으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전용사용료보다 적게 부과·징수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1. 부천시체육회 등에서 주관 또는 주최로 유치한 전국단위이상 공식경기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5
2. 체육행사·공공행사·문화예술행사 및 대한체육회와 그 산하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프로경기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0
3. 프로경기 등을 포함한 일반행사 : 관람수입 총액의 100분의 15

③초대권 발행은 총 발행매수의 100분의 5 이하로 하고, 초과 발행매수는 일반권으로 본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산·납부하여야 한다.

⑤관람권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10조(입장권)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장권을 구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료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도 및 시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
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측 담당 임직원·지도요원·출전선수 및 신문사·방송사·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3. 6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4. 국가유공자 및 장애등급 3급 이상 장애인
5. 학생체육대회 개최 시 당해학교 교사 및 학생
6. 국제대회, 전국 또는 도민체전 등 주요경기대회 응원단
7. 기타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고 입장하는 사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는 500원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과 어린이는 200원으로 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2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 가. 국가, 도 또는 시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 나. 시의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
- 다. 학교운동부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연습경기

2. 100분의 50 이하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행사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경기·행사. 다만, 판매 등 상행위 행사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행사

라.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공식경기

마.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수업을 목적으로 사용할 때

3. 100분의 30 이하

가. 세계타이틀전이나 아시아 또는 세계적 규모의 경기

나.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행사

다. 시가 후원하는 체육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경기

라. 민속제나 고유민속의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마.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학교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바. 도 및 시의 체육단체에서 주관하는 저소득 모·부자가정, 국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불우청소년, 어린이, 노인,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경기·행사

사. 기타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행사

②제9조제1항에 따라 발행한 관람권 총량의 100분의 5 이하의 초대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①연습사용권이나 입장권은 미사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제8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

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 사용료의 100분의 50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다른 경기의 일정으로 정지된 기간만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없는 경우 : 그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3. 중계방송이 전혀 되지 아니한 경우 : 중계방송료 전액
4. 우천이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5. 제14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료 전액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허가받은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는 경우
4.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②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체육시설 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14조(관람 또는 입장의 제한) 시장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관람권 또는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체육시설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2. 기타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15조(시설의 사용수익허가) ①시장은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수익 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는 때에는 사용료산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전기 및 상·하수도·청소요금 등 부대사용료는 별도 징수하여야 한다.

③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16조(사용자 책임) ①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망실·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중에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③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사용하기 전의 최적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7조(사용자의 설비 등)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하며,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제18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시장은 체육시설(공공부지 및 공원 내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를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때에는 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우수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공단에 위탁하는 때에는 제2항 및 제3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구성·운영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1. 수탁자의 적격성, 체육시설 운영의 전문성 및 투명성
2. 재정운영의 책임성,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조정능력 등

제20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업무 수행)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제6조 내지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용의 허가·제한·취소, 회원모집 및 회원권의 발급, 강습프로그램의 개설·변경·폐지, 관람권·입장권의 발행, 관람·입장의 제한, 사용료의 징수·감면·반환, 시설의 사용수익허가 등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단이 아닌 수탁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강습프로그램을 신설·변경·폐지하는 경우 미리 시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15조 규정에 의한 시설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없다.

제22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관리와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때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23조(감독) ①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수탁·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한 때
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3. 기타 국가 또는 도·시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 체육시설로 본다. 다만, 「사회복지 및 체육·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심사기준 개발 지침」에 의하여 위탁기간이 10년 미만인 체육시설은 1회에 한하여 심사를 거쳐 5년간 재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입장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사용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제9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원 내 체육시설 위탁료는 「부천시 체육시설 설치·운영
조례」를 적용한다.

[별 표 1]

부천시 체육시설(제2조관련)

명칭	시설명	기능	위치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인라인스케이트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체력단련장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
	보조경기장	육상, 축구, 일반행사	"
	야구장	야구,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25번지
	궁도장	궁도, 체육행사,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8번지
	인공암벽	암벽	"
	테니스장	테니스	"
부천체육관	체육관	농구, 배구, 배드민턴, 핸드볼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중동 1024번지
	체력단련장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
	보조운동장(1)(2)	축구, 족구, 농구, 씨름 인라인스케이트, 일반행사	"
소사국민 체육센터	체육관	농구, 배드민턴, 탁구 각종 강습 프로그램, 일반행사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400-1번지
	체력단련장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
	수영장	수영,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
송내사회 체육관	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농구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57번지
	체력단련장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
서촌 다목적체육관	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에어로빅 각종 강습프로그램,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상동 466번지
테니스장	원미테니스장	테니스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산16-2번지
	복사골테니스장	테니스	부천시 원미구 중동 1212번지
	제1배수지테니스장	테니스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97-5번지
성무정	주경기장	궁도, 일반행사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 산2-26번지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농구, 족구, 배구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중동 788번지
원미운동장	주경기장	육상, 축구, 농구, 족구, 배구 일반행사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산16-3번지
북부수자원 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축구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434번지

[별표 2]

전용사용료(제8조관련)

(단위: 원)

시설별	사 용 구 분		체육경기		체육이외 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중 합 운동장	주 경기장	육상장 (트랙)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주 잔디구장	주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야간	1,5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보조경기장		오전	40,000	60,000	200,000	300,000
			오후	40,000	60,000		
	야구장		주간	40,000	60,000	80,000	120,000
인공암벽		주간	40,000	60,000			
시민운동장		오전	40,000	60,000	200,000	300,000	
		오후	40,000	60,000			
원미운동장		주간	80,000	120,000	150,000	250,000	
		야간	80,000	120,000			
부 천 체육관	체육관	주간	150,000	200,000	300,000	400,000	
		야간	200,000	300,000	400,000	550,000	
	체력단련장		주간	60,000	80,000	100,000	150,000
			야간	80,000	100,000	150,000	200,000
	보조운동장(1)		오전	40,000	50,000	100,000	150,000
			오후	40,000	50,000		
보조운동장(2)		오전	20,000	30,000	50,000	80,000	
		오후	20,000	30,000			
송내사회체육관		오전	40,000	60,000	60,000	80,000	
		오후	40,000	60,000	60,000	80,000	
		야간	80,000	120,000	120,000	160,000	
소사국민 체육센터	체육관	오전	30,000	40,000	50,000	70,000	
		오후	30,000	40,000	50,000	70,000	
		야간	60,000	80,000	100,000	140,000	
	수영장	09:00~18:00	400,000	520,000	800,000	1,040,000	
		09:00~12:00	140,000	182,000	280,000	364,000	
		12:00~18:00	300,000	390,000	600,000	780,000	
서촌다목적체육관		오전	30,000	40,000	50,000	70,000	
		오후	30,000	40,000	50,000	70,000	
		야간	60,000	80,000	100,000	140,000	
테니스장(면당)		주간	30,000	40,000			
		야간	45,000	60,000			
궁 도 장		주간	30,000	40,000			
		야간	40,000	60,000			
북부수자원 생태공원	인조잔디구장	주간	60,000	80,000	150,000	200,000	

○ 조기사용료는 주간사용료에 준하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함.
 ○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육상장, 주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 징수하되, 종합운동장 주잔디구장, 인조잔디구장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함.
 ○ 유아,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체육수업은 체육경기에 준함.

[별표 3]

연습사용료(제8조관련)

(단위: 원)

경기장별	사용구분	기 준	1인당 사용료	
			개인	단체
종합운동장	육상트랙	1회 2시간	500	400
	보조운동장	1회 2시간		1팀 10,000
	체력단련장	1회 2시간	1,500	1,200
	야구연습장	1회 2시간	1,500	1팀 10,000
	인공암벽	1회 2시간	1,500	1,200
시민운동장	축구경기	1회 2시간		1팀 10,000
원미운동장	축구경기	1회 2시간		1팀 10,000
부천체육관	체육관	1회 2시간	2,500	2,000
	체력단련장	1회 2시간	2,000	1,600
	보조운동장(1)	1회 2시간	1,500	1팀 10,000
송내사회체육관		1회 2시간	1,500	1,200
소사국민체육센터	체육관	1회 2시간	1,500	1,200
	수영장(1회)	일반	3,000	2,400
		청소년, 군인	2,500	2,000
		노인, 어린이	2,000	1,600
서촌다목적체육관		1회 2시간	1,000	800
테니스장	평일	1회 2시간	2,500	1면 10,000
	휴일	1회 2시간	3,500	1면 14,000
	평일 야간	1회 2시간		1면 15,000
	휴일 야간	1회 2시간		1면 21,000
공 도 장		1회 2시간	1,200	1,000

- 단체사용료의 경우 축구경기 및 야구경기는 팀당으로, 테니스경기는 면당으로 각각 연습사용료를 계산하고, 기타는 20인 이상을 말함.
- 공휴일은 전용사용을 우선으로 하며, 전용사용 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연습사용 허용.
- 월 사용료 = 1인당 사용료 × 20 (단, 테니스는 월사용료 30,000원).
- 개인 강습프로그램 수강료 = 월 사용료 × 5 이내.
- 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 학교운동부 연습경기는 1회당 5일 이내 한정.
- 자원봉사 마일리지 실적(증표표기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육시설 사용요금으로 인정.

[별표 4]

방송사용료(제8조관련)

(단위: 원)

구 분			TV		라디오	
			국외	국내	국외	국내
중계 방송	체육경기	중합 운동장	100,000	60,000	50,000	30,000
		시민 운동장	80,000	40,000	40,000	20,000
		부친 체육관	60,000	40,000	40,000	20,000
		소사국민 체육센터	60,000	40,000	40,000	20,000
		송내사회 체육관	60,000	40,000	40,000	20,000
		서촌다목적 체육관	30,000	20,000	20,000	10,000
	체육이외 행사		120,000	120,000	60,000	60,000
녹화 촬영	녹화 또는 녹음		30,000	20,000	20,000	10,000
	축구 또는 행사촬영		60,000	40,000	40,000	20,000

-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
-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별표 5]

상업사용료(제8조관련)

(단위: 원)

구 분	기 준	주 경기장		기 타	
		중 계 방송시	중 계 방송외		
영화촬영	주 간	100,000		100,000	
	야 간	150,000		150,000	
에드별론 등의 계양에 의한 광고	1일 1개	○ 국내 아마추어경기 5,000 ○ 국제경기, 프로경기, 일반행사 20,000			
게시부착 광고물 (제공미터당)	년 간	500,000		350,000	
	5일 이내	60,000		40,000	
	1일 초과	10,000		10,000	
진열, 전람 광고물	5제공미터 이내	1일 1개	80,000	50,000	30,000
	5제공미터 이상 10제공미터 이내	1일 1개	150,000	100,000	30,000
	10제공미터 이상(무대는 제외)	1일 1개	200,000	150,000	5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 (1부당 가격)	판매액의 100분의 20			
기타 물품판매 또는 대여	매출금액 (원가)	판매액 또는 대여료의 100분의 10			
○ 피켓 1회 1개, 전단 1,000매당 각 1,000원으로 계상. ○ 진열, 전람광고물(10제공미터 이상)은 무대는 제외함.					

[별표 6]

부속시설사용료(제8조관련)

(단위: 원)

구 분		산 출 기 초
라이트시설		기본료(80,000원)+(월기본료×일/30×사용면적)+실전기사용료
전기조명시설		기본료(50,000원)+(월기본료×일/30×사용면적)+실전기사용료
냉·난방		기본료(50,000원)+(월기본료×일/30×사용면적) +실사용 전기 유통고시가격
음향시설		기본료(60,000원) : 마이크 2개 사용료포함 (마이크 추가시 1개당 5,000원)
스코어판		1일 20,000원
농구골대		1일 50,000원
샤 위 실		1일 1회 기본료(20,000원)+전기사용료
전 광 관	총 합 운동장	기본료 300,000원(영상부문 및 녹화비 포함)+실제 전기사용료 단,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용시에는 1회 100,000원을 추가 징수하고, 녹화 요구시에는 녹화비 1일 100,000원을 별도 징수 (사전 녹화신청시 녹화비용 부담)
	부 천 체육관	기본료 40,000원, 단,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용시에는 1회 100,000원을 추가 징수하고, 녹화 요구시에는 녹화비 1일 100,000원을 별도 징수
라인기계		1대당 × 1일 20,000원(석회포함)
접 의 자		1개당 × 1일 500원
탁 자		1개당 × 1일 3,000원
발 언 대		1개당 × 1일 5,000원(대), 3,000원(소)
각실사용		1일 50,000원
개 인 사 물 함		1개당 × 1월 3,000원 (임대기간 경과시 일할단위 계산 부과) ※이용대상자 : 정규회원에 한함
배구지주대		1개당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난방 및 상·하수도요금은 계량기 등에 의거 사용량을 측정하여 일괄징수하며, 계량기 등에 의한 측정이 어려울 경우 전월 공공요금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 산출. (전월 공공요금/30일) ○ 운영요원(전광관 조작요원 포함)은 주최 측에서 준비 ○ 천연잔디축구장은 1일 3계임을 초과할 수 없음. ○ 천연잔디축구장은 하절기 및 동절기 잔디상황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부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제정 1999. 01. 15 조례 제1625호
개정 1999. 02. 18 조례 제1628호
개정 2001. 02. 10 조례 제1816호
개정 2001. 07. 27 조례 제1842호
개정 2002. 04. 10 조례 제1875호
개정 2003. 01. 15 조례 제1903호
개정 2003. 04. 10 조례 제192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종합운동장의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야구장, 체육관, 수영장, 빙상장, 테니스장, 투기체육관, 궁도장, 시민운동장, 육상투척장 등 부천시에서 건립한 모든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속시설이라 함은 그에 부속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방송, 광고게시, 공연, 전람 등 기타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각종 경기 및 행사를 위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는 자를, 전용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기본사용료를 말한다.
4. 관람자라 함은 유·무료관람을 하는 자를, 관람료라 함은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을 목적으로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6. 단체관람이라 함은 특정단체 또는 그 구성원인 인솔자에 의하여 20인이상 동시 관람하는 것을 말한다.
7.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교 학생과 6세이상 12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8. 청소년이라 함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과 13세이상 20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9. 군인이라 함은 하사관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을 포함한다.
10. 어른이라 함은 20세이상의 자를 말하며 65세이상의 자는 경로대상으로 한다.

제3조 (사용허가) ①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체육시설 사용자는 사용자의 주소, 성명, 사용할 시설, 사용목적, 사용기간 및 시간, 관람료를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체육시설 이용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연습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시장은 체육시설 사용자가 2인이상 경합시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등 행사
7. 기타 시장이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5조 (시설의 개방)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개방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하여야 한다. 단, 개방계획 수립시에는 각종 경기대회, 행사 및 시설의 보수, 휴무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으며, 년간·월간·일간 주민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고지 및 주민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상설 스포츠 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이용료,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③시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와 제22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소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개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체육시설의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개방 제한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시의 특별한 행사
2. 시설의 개보수
3. 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의 거절 및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 (사용시간) ①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할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사용료) ①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전용사용, 이용사용, 중계방송,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 사용등으로 구분하여 (별표 1) 내지 (별표 5)와 같다. 단,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상행위사용료중 물품대여 및 판매에 대한 사용료 산출에 있어 물품의 종류, 수량의 과다로 매출원가, 판매수량을 부득이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상행위사용자의 사업계획서를 참고하여 다음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있다.(연간 입장인원/연간 사용일수×금회사용일수×1인당 평균구매가격 - 원가)×20/100

③사용료의 납부방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구분에 의하여 시장의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초과사용 및 전기, 난방, 상·하수도요금등은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하며, 시설을 년중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익월 10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 징수) ①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사용료외에 관람권 수입총액의 10퍼센트(프로경기는 15퍼센트)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단, 부천시체육회 산하단체등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여 부천시에 유치하는 전국단위이상의 공식 경기에 대한 사용료는 관람권 수입총액의 5퍼센트로 한다.

②사용자가 발행하는 초청장, 초대권 매출액은 관람권 매출액으로 보며, 관람수입 금액의 총액이 전용사용료에 미달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사용료는 행사종료 3일 이내에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대한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가 주관, 주최 또는 후원하는 운동경기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기는 프로경기로 보지 아니한다.

제12조 (초과사용료등)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시간당 당해 시설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사용 시간이 1시간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의 국경·조 행사
2. 시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및 경기
3.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4. 불우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어린이, 경로자, 군인
5. 등록된 체육 동호인 단체의 비영리 목적의 행사
6. 기타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4조 (사용료의 반환) ①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및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 연기

할 때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 할 수 없을 때에는 정지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우천등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와 시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의 취소를 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 ②이용 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 이용료 및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관람권의 발행) ①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별관람권
2. 일반관람권
3. 군인 및 학생관람권
4. 단체관람권(일반, 군인 또는 학생)
5. 경로우대권
6. 어린이 관람권(초등학생)

②체육시설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관람권을 발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권이 없이 입장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시가 주관하는 국경·조 행사에 참석하는 자
2. 경기 또는 행사의 주최측 담당 임원, 출전선수, 신문사 및 방송사의 출입기자
3.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휴대한 자
4. 보호자가 있는 6세미만의 어린이 또는 65세이상의 자로서 경로우대증이나 주민등록증을 휴대한 자
5. 각급학교 학생체육대회 개최시 해당학교 교사와 학생 및 전국체전, 국제경기 또는 국내 주요 경기에 대하여 응원단으로 동원되는 인원

제16조 (관람권의 금액) ①관람권의 금액은 사용자가 정하되, 그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단, 관람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그 금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의 금액에 미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은 500원으로 한다. 다만, 청소년과 어린이는 200원으로 한다.

제17조 (관람권의 예매) ①관람권을 예매하는 경우에는 예매금액의 20퍼센트(프로경기는 25퍼센트)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사용자 책임하에 선정하며, 사용자는 그 선정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한다고 인정될 때

-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관련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9조 (사용자의 부대시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회복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20조 (양도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한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 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1조 (손해배상) ①사용허가 기간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②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중에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22조 (사회체육지도자의 배치) 시장은 체육시설의 사용 및 이용자에 대한 경기 규칙 및 체육활동 전반에 대한 지도를 위하여 사회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23조 (체육시설의 관리)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의 종류별 규모에 적절한 전문관리인을 확보, 배치하여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대표 및 검인) ①관람권은 당해 체육시설에서 대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②관람권, 초대권, 임원증, 선수증등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후 검인된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25조 (수수료)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물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수료는 500원 상당의 부천시수입증지를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26조 (위탁관리) ①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부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7조 (준용규정)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4조, 제18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위탁관리 수탁자와 체육시설의 사용자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2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1999. 1. 15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2. 18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2. 10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 7. 27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 4. 10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 15 조례 제1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4. 10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01. 2. 10, 2001. 7. 27, 2002. 4. 10>

전용사용료(제10조관련)

(단위:원)

시설별	사용구분		체육경기		체육이외 행사		
			평일	공휴일	평일	공휴일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육상장(트랙)	주간	40,000	60,000	200,000	300,000
			야간	60,000	90,000	300,000	400,000
	주잔디구장	주간	660,000	2,000,000	1,500,000	2,200,000	
		야간	1,500,000	2,400,000	2,000,000	2,600,000	
	보조 경기장	주간	50,000	70,000	150,000	300,000	
시민운동장		주간	30,000	50,000	100,000	150,000	
부천체육관	주경기장	주간	60,000	90,000	220,000	330,000	
		야간	90,000	135,000	330,000	495,000	
	보조경기장	주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간	30,000	45,000	60,000	90,000	
송내사회체육관		주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간	30,000	45,000	60,000	90,000	
소사국민체육센터	체육관	주간	20,000	30,000	40,000	60,000	
		야간	30,000	45,000	60,000	90,000	
	수영장	09:00~18:00	400,000	520,000	800,000	1,040,000	
		09:00~12:00	140,000	182,000	280,000	364,000	
		12:00~18:00	300,000	390,000	600,000	780,000	
테니스장		면당	10,000	20,000	12,000	24,000	
궁도장			10,000	10,000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전기, 난방,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별도 징수 ○ 조기 사용료는 주간 사용료에 준하며, 토요일은 공휴일에 준함. ○ 주잔디구장은 1게임을 원칙, 게임초과당 2할을 가산함. ○ 체육대회 등 행사는 육상장, 주잔디구장 사용료를 합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별표 2] <개정 2001. 2. 10, 2001. 7. 27, 2002. 4. 10, 2003. 1. 5, 2003. 4. 10>

개인연습사용료(제10조관련)

(단위:원)

경기장별	사용구분	기 준	사 용 료			
			개 인		단 체	
종합운동장	육상장(트랙)	1인 2시간	300		150	
	보조잔디구장	1인 2시간	3,000		1,500	
시민운동장		1인 2시간	500		300	
부천체육관	주경기장	1인 2시간	2,500		2,000	
	보조경기장	1인 2시간	1,000		800	
송내사회체육관		1인 2시간	1,000		800	
소사국민체육센터	체육관	1인 2시간	개인: 1,000, 단체: 800			
	수 영	회 원 (1인/월)	개 인 (1인/일)	일반: 3,000, 청소년: 2,500, 어린이: 2,000		
			일 반	자유정기이용 주5회강습 추3회강습	60,000 60,000 50,000	
				청소년	자유정기이용 주5회강습 추3회강습	50,000 50,000 35,000
				어린이	자유정기이용 주5회강습 추3회강습	40,000 40,000 30,000
	에어로빅	1인/월		45,000		
		1인/일		2,000		
	헬 스 장	1인/월		청소년 35,000, 일반 45,000		
		1인/일		청소년 1,500, 일반 2,000		
	재즈댄스	1인/월		일 반	3회	45,000
				청소년	3회	35,000
	힙합댄스	1인/월		일 반	2회	35,000
				청소년	2회	25,000
				어린이	2회	20,000
	발 레	1인/월		어린이	2회	40,000
나이트댄스	1인/월		일 반	1회	30,000	
차밍댄스	1인/월		일 반	2회	35,000	
테니스장	면당	1인 2시간	1,500		1,200	
궁 도 장		1인 2시간	500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체는 동일 소속팀의 10인 이상 ◦ 축구는 팀구성 인원이 16인 이하일 때 16인으로 연습사용료 계산 ◦ 테니스장의 월 사용료는 25,000원을 징수함. ◦ 육상경기장(트랙) 워밍업장, 보조경기장에서 초·중·고 및 도·시 대표선수단의 강화 훈련은 무료 (무료사용자는 필히 허가를 받아 사용하되 1회 사용허가는 5일 이내로 한정) ◦ 궁도장의 월사용료는 20,000원을 징수함. 						

[별표 3] <개정 2001. 2. 10, 2003. 1. 15>

방송사용료(제10조관련)

(단위:원)

구 분			TV		라디오	
			국외	국내	국외	국내
중계방송	체육경기	종합운동장	100,000	60,000	50,000	30,000
		시민운동장	80,000	40,000	40,000	20,000
		부천체육관	60,000	40,000	40,000	20,000
		소사국민체육센터	60,000	40,000	40,000	20,000
	체육이외 행사		120,000	120,000	60,000	60,000
녹화촬영	녹화 또는 녹음		30,000	20,000	20,000	10,000
	축구 또는 행사촬영		60,000	40,000	40,000	20,000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경기 중계방송료는 당해 체육시설 기본방송료의 2배 징수 ◦ 방송료는 주최 측에서 부담한다. ◦ 카메라 및 뉴스보도용은 무료 					

[별표 4] <개정 2003. 1. 15>

상업사용료(제10조관련)

(단위:원)

구 분	기 준	요 금		
		주 경기장		기 타
		중 계 방송시	중 계 방송외	
영화촬영	주 간	100,000		100,000
	야 간	150,000		150,000
애드벌룬 등의 계양에 의한 광고	1일 1개	5,000		5,000
게시부착 광고물(㎡당)	년 간	500,000		350,000
	5일 이내	60,000		40,000
	1일 초과	10,000		10,000
진열, 전람광고물 (3㎡이내)	1일 1개	80,000	50,000	30,000
진열, 전람광고물 (3㎡이상 6㎡이내)	1일 1개	150,000	100,000	30,000
프로그램 선전책자 판매	판매부수 (1부당 가격)	판매액의 10%		판매액의 10%
기타 물품대여 (판매대여)	매출금액 (원가)	이익금의 20%		이익금의 20%
비 고	피켓 1회 1개, 전단 1,000매당 각 1,000원			

[별표 5] <개정 2001. 2. 10, 2003. 1. 15>

부속시설사용료(제10조관련)

(단위:원)

구 분	산 출 기 초	비 고
라이트시설	기본료(40,000원)+(월기본료×일/30×사용면적)+ 실전기사용료	
전기·조명등	기본료(10,000원)+(월기본료×일/30×사용면적)+ 실전기사용료	
냉·난방	기본료(50,000원)+(월기본료×일/30×사용면적) + 실사용전기 유통고시가격	
음향시설	기본료(50,000원)+ 마이크사용료(1개당 5,000원)	
스코아관	1일 20,000원	
농구골대	1일 50,000원	
샤 위 실	1일 1회 기본료(20,000원)+ 전기사용료	
전 광 관	중 합 운동장	기본료 200,000원, 단,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용시에는 1회 100,000원을 추가 징수하고, 녹화 요구시에는 녹화비 1일 100,000원을 별도 징수
	부 천 체육관	기본료 40,000원, 단, 영상부문 포함하여 사용시에는 1회 100,000원을 추가 징수하고, 녹화 요구시에는 녹화비 1일 100,000원을 별도 징수
라인기계	1대당 × 1일 20,000원(석회포함)	
접 의 자	1개당 × 1일 300원	
탁 자	1개당 × 1일 2,000원	
발 언 대	1개당 × 1일 4,000원(대), 2,000원(소)	
각실사용	1일 50,000원	
개 인 사 물 합	1개당 × 1월 3,000원 (임대기간 경과시 일할단위 계산 부과) ※이용대상자 : 정규회원에 한함	
<p>◦ 전기·난방 및 상·하수도요금은 계량기 등에 의거 사용량을 측정하여 일괄 징수하며, 계량기 등에 의한 측정이 어려울 경우 전월 공공요금 사용료를 기준으로 사용료 산출 (전월 공공요금/30일)</p> <p>◦ 운영요원(전광관 조작요원포함)은 주최 측에서 준비한다.</p> <p>◦ 축구잔디구장은 1일 3게임을 초과할 수 없다.</p> <p>◦ 축구잔디구장은 하절기 및 동절기 잔디상황에 따라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p> <p>◦ 체육경기시에는 각실 및 집기, 운동기구 사용료 면제</p>		